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0. . .	
연 월 일	(제 회)	

수 산 식 품 산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 「식품산업진흥법」 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수산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제5조·제8조)
-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시, 시·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0조)
- 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보고 하도록 함(안 제27조)
- 마.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

증의 신청, 심사방법, 인증서 발급, 표시방법, 정기심사 등 절차를
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사.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을 정함(안 제40조 및 안 제4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후 1개월 내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수산식품 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제조·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식품의 원료, 수산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유(간유) 가공업
2. 냉동·냉장업
3. 선상가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유(간유) 가공업 또는 냉동·냉장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영 제13조

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영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장(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선은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3. 기타 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정보통신망에 따라 내주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가공공장의 주소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
5. 자숙(煮熟)술,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냉동기기(냉동·냉장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제출할 때에는 어업허가(원양어업허가 포함) 및 사업자 등록 사항 중 폐업 또는 어업허가의 취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어업허가의 취소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보급
2.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양식기술 교육 및 지원
3.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가공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보급·가공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공표)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 유래·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4.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장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 사용용기 및 기구
6. 제품의 특성
7. 분포 실태
8.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9. 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주소(시·군·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조리·가공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대한민국수산물명인지정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6조(대한민국수산물명인 전수자의 선정 등) ①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이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전수자(이하 "수산물명인 전수자"라 한다)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수산물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 계획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사진(3.5cm×4.5cm) 2장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7조(활동상황 점검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물식품등 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29조(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매입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산물식품품목제조보고서

②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심사를 위하여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試料)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제31조(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산 수산물 사용확인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시험 성적서
- ⑤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2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②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품질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을,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이 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 "원산지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첨부 서류

가. 해당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나. 최근 1년간 해당 품목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다. 해당 품목의 원료가 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첨부서류

가. 해당 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나.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다.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2. 원산지가 기재된 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5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①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제34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영 제34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2. 현장심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해당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최근 1년간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영 제34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6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서의 발급) ① 원산지

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영 제34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서(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7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①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8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과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원산지 인증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4조제1항제1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9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표시는 별표 8과 같으며,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

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출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물품질관리원 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41조(우수수산물품질관리원 지정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물품질관리원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수산물품질관리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42조(우수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3조(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우수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4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로부터 3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해당 수산물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해당 수산물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가공에 관한 자료
4. 해당 수산물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시험의뢰 결과 자료

제45조(조사 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으며,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관계자의 경우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46조(사후관리의 종류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등을 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물식품

및 그 가공 현장과 서류에 대해 방문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의한 조사등을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의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 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서

②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산물

통식품 품질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제31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0년 2월 19일
2. 제28조에 따른 수산물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0년 2월 19일
3. 제3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020년 2월 19일
4. 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 지정요건 등: 2020년 2월

19일

5. 제44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2020년 2월 19일

6.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2020년 2월 19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지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내준 지정서, 인증서 및 조사원 증표는 이 규칙에 따라 새로 내주기까지 이 규칙에 따른 지정서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 중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을 "사항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인력 제6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고, 같은 호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그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어유(간유) 가공업 및 냉동·냉장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냉동·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lx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복개되어야 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용기·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	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창문 등에는 쥐 및 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과 그 밖의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cm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선상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lx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 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용기·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cm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어류(간유) 가공업	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솥의 수는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제유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냉동·냉장업	1) 냉동·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

	를 각 실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횡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영하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팽창관·수액기·증발기 및 유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구비한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 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압팽창관·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선상가공업	
1) 선상냉동·냉장업(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나목에 따른 냉동·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횡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영하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영하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선상어유(간유)가공업	제2호가목에 따른 어유(간유)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18조 관련)

1.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항목	분야	지정대상 (분야)		평가 (평점)
		수산물전통식품명인	일반수산물명인	
가. 전통성	A. 법 제2조제7호의 수산물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평가 생략>	25
	B. 법 제2조제7호의 수산물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C. 법 제2조제7호의 수산물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나. 우수성	<평가 생략>	<평가 생략>	A.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25
			B.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20
			C.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15
다. 정통성	A.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평가 생략>	<평가 생략>	20
	B.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15
	C.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평가 생략>	<평가 생략>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10
마.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평가 생략>	<평가 생략>	25
	B.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C.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바. 산업성	A.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하여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5
	B.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하여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사. 윤리성	1) 수산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B.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C.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제22조 관련)

1.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KOREAN SEAFOOD GRAND MASTER)" 및 "KOREAN SEAFOOD GRAND MASTER"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사항

- 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번호
- 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
-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성명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수	배점	평점	판정
가. 공장 입지(立地)	2	6		
나. 작업장	7	21		
다. 제조설비	1	9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3	9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4	15		
바. 용수(用水) 관리	2	7		
사. 개인 위생	2	7		
아. 환경 위생	3	10		
자. 유통 관리	3	9		
차. 포장 및 표시	3	7		
합 계	30	100		

<판정기준>

○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2호바목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가. 공장입지	1)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3.0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의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1.5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0		
	2) 공장에서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는 쉬운가?			
	A.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한 경우	3.0		
	B.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재료·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5		
	C.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나. 작업장	1)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교차오염 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3.0		
	B.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교차오염 방지는 가능한 경우	1.5		
	C.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의 미흡으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0		
	2)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구조와 기능은 적절한가?			
	A.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고 배수 등의 기능이 양호한 경우	3.0		
	B. 바닥과 벽이 적절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으나 배수 등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3.0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3.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나. 작업장	5)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3.0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6) 작업장 출입구에는 수세·세척설비 및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 활용되고 있는가?			
	A. 해당 설비가 잘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설비의 비치 또는 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7)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3.0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다. 제조설비	1)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9.0		
	B.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4.5		
	C.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라. 원료 조달·관리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A. 사용한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며, 그 80%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3.0		
	B. 사용한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며, 그 50%부터 80%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1.5		
	C. 사용한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지만, 그 50%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라. 원료 조달·관리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3.0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0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3.0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마. 공정 · 품질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5.0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 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 검사하고 있는가?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4.0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2.0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마. 공정 · 품질관리	3) 해당 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가?			
	A.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1.5		
	C. 전문인력이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0		
	4)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 · 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 · 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 · 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바. 용수관리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4.0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부터 100m까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2.0		

	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0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3.0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사. 개인위생	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3.0		
	B.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1.5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0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4.0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2.0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0		
아. 환경위생	1)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의 운영은 적정한가?			
	A.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경우	3.0		
	B.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1.5		
	C. 공장 발생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0		
	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는 적절한가?			
	A.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하고 처리상태가 위생적인 경우	3.0		
	B.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3)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4.0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0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자. 유통관리	1)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3.0	
	A.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최종소비 시점까지 해당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B.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최종소비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이 경미한 품질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2)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3.0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3.0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	1.5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0		
	3)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0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0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차. 포장 및 표시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3.0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0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포장재의 보관 및 입·출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A.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입·출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2.0		
B.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나 입·출고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제33조제1항 관련)

1. 표지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수산전통식품", "(KOREA TRADITIONAL FOOD)" 및 "KOREA TRADITIONAL FOOD"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기본 요구사항

- 가.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등록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다.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수산가공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인 수산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가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면서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 가.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는 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전체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물을 제외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원산지가 동일한 수산물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은 제품 중에 잔류하는 함량비율을 기준으로 1.5퍼센트까지는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동일한 원재료는 서로 다른 원산지(국가 단위를 말한다)의 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 마. 인증을 신청한 수산가공식품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특정 수산물의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그 해당 농수산물은 인증을 신청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원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가. 계산식

$$\text{동일 국가산 원재료 백분율} : \left(\frac{I_{coo}}{G - I_{fab}} \times 100 \right) = \left(\frac{I_{coo}}{I_{coo} + I_{coa} + (I_{fa} - I_{fab})} \times 100 \right) \geq 95\%$$

위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G : 최종제품(포장재, 용기는 제외한다)의 중량 또는 용량(액상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I_{coo} : 동일 국가산 원재료[가공식품 중의 농수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한다) 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중량 또는 용량

I_{coa} : 다른 국가산 원재료의 중량 또는 용량

I_{fa} :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의 중량

I_{fab} :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이 전체 배합비의 1.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

는 실제 투입 중량 또는 용량(전체 투입비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투입량 전체를 반영하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총량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양만 반영한다)

- 나. 원재료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재료로 투입하는 식품에서 차지하는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의 함량을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반영한다.
- 다. 원재료 농수산물을 그대로 착즙하여 얻어진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착즙액의 양을 원산지가 동일한 원재료 농수산물 함량계산에 산입하고, 착즙액을 농축한 농축액이나 페이스트 또는 건조한 분말제품을 사용하는 때에는 최초 착즙액으로 환산한 양을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 함량계산에 반영한다. 이 때 환원계수는 최초 착즙액으로부터 얻어지는 농축액이나 페이스트 또는 분말 등의 수율 백분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 라. 원재료 농수산물의 함량은 중량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되는 원재료의 비중을 모르는 경우에는 용량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기본 요구사항

- 가.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영업장이어야 한다.
- 나. 인증을 신청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 신고관청으로부터 해당 영업장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다.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가공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가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면서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식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 가.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최종 식품(주식 및 부식을 포함한다)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되, 전체 조달하는 식재료 중에서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의 비율이 최소한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는 원산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식점등의 의무 표시 대상품목은 반드시 인증대상 국가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가공식품을 식재료로 조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 농수산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원산지가 동일한 식재료의 사용비율을 계산하되,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비율은 가공식품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 마.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식재료는 서로 다른 원산지(국가 단위를 말한다)의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3. 식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가. 계산식

동일 국가산 식재료 백분율 :

$$\left(\frac{I_{coa} + I_{copa}}{G} \times 100 \right) = \left(\frac{I_{coa} + I_{copa}}{I_{coa} + I_{copa} + I_{coaa} + I_{coap}} \times 100 \right) \geq 95\%$$

위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G : 인증을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조달한 전체 식재료(포장재, 용기를 제외한다)의 총량

$$(G = I_{coa} + I_{copa} + I_{coaa} + I_{coap})$$

I_{coa} : 동일 국가산 농수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식재료의 총량

I_{copa} : 식재료로 조달한 가공식품 중에 함유된 동일 국가산 농수산물의 총량

I_{coa} : 조달한 식재료 중에서 다른 국가산 농수산물 식재료의 총량

I_{coap} : 조달한 다른 국가산 농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식재료의 총량

- 나. 원재료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에서 차지하는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의 함량을 가공식품 원산지인증기준의 원산지 함량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다. 식재료 농수산물의 함량은 중량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되는 원재료의 비중을 모르거나, 최종 제공하는 음식이 액상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용량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다.
- 라. 액상제품(수프, 페이스트, 탕류, 죽류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의 함량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원산지인증 표시(제39조 관련)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가. 표시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나.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 내부의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이상" 및 "국가명산 100%"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8) 표시도형의 위치는 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용기에 표시한다.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표시

가. 표시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나.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 제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희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희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메뉴판 등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 내부의 "식재료 원산지", "국가명산 95%이상" 및 "국가명산 100%"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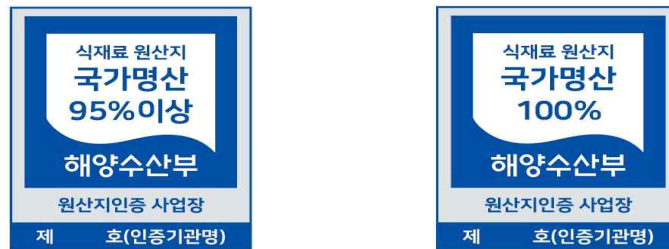
6) 표시도형의 크기는 메뉴판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8) 표시도형의 위치는 인증을 받은 해당 음식점등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되, 개별 음식에 표시할 수 없다.

원산지인증의 현판(제39조 관련)

1. 표시도형



2. 제1호의 표시 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의 경우는 "한국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3. 제도법

-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270mm, 세로 360mm로 한다.
- 2) 표시도형은 인증 받은 조건에 따라 '95%이상'과 '100%'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10mm로 한다.
- 3) '원산지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 4)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은 바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 5) 표시판이 부착될 위치를 고려하여 '가로×세로'를 '3×4'의 비율로 유지한다면 표시판 크기의 변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표시도형 및 글자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변형하여야 한다.
- 6)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7) 표시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영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8) 앞판의 문자 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하되, 영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 1) 인증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인증업무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인증업무정지 3개월	인증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인증업무정지 3개월	인증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	인증업무정지 3개월	인증업무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인증업무정지 3개월	인증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	인증업무정지 3개월	인증업무정지 6개월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인증업무정지 3개월	인증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을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법 제35조제1항			
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표준인증의 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표시사용정지 1개월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표시변경 명령	표시사용정지 3개월	표시사용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1. 우수수산물품질인증 심사 또는 정기심사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 분	금 액
가. 기본 수수료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 등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 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비고

-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 원산지인증 심사 또는 원산지인증에 관한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우수수산물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구 분	금 액
가. 기본 수수료	우수수산물품질인증 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필요한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산정한다. 3) 외국인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르고, 국외항공운임은 같은 규정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르며,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 기관	기관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소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출연기관 ☐ 연구기관 ☐ 기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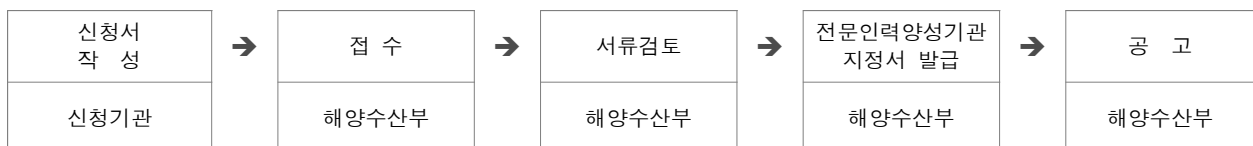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위 기관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 기관	기관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소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출연기관 [] 연구기관 [] 기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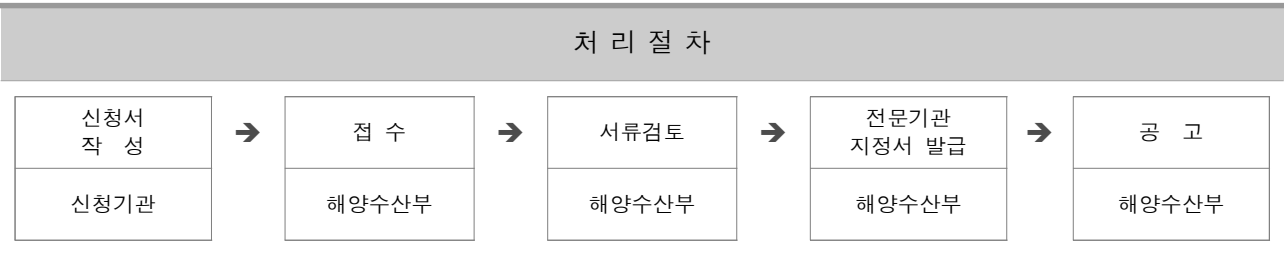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위 기관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출지원분야

[] 해외수산식품인증지원 분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 기관	기관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소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출연기관 ☐ 연구기관 ☐ 기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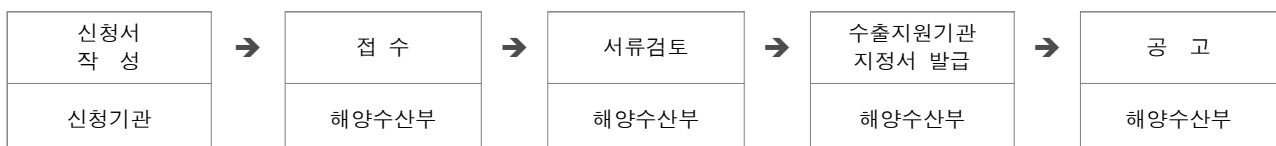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해외수산식품 인증지원 분야 관련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지정분야 :	

위 기관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앞쪽)		
신청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직업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에정지									
	시설규모		부지		건물		설비		종	
			m ²		m ²					
	재원조달		계		정부보조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백만원)									
사업형태				구성원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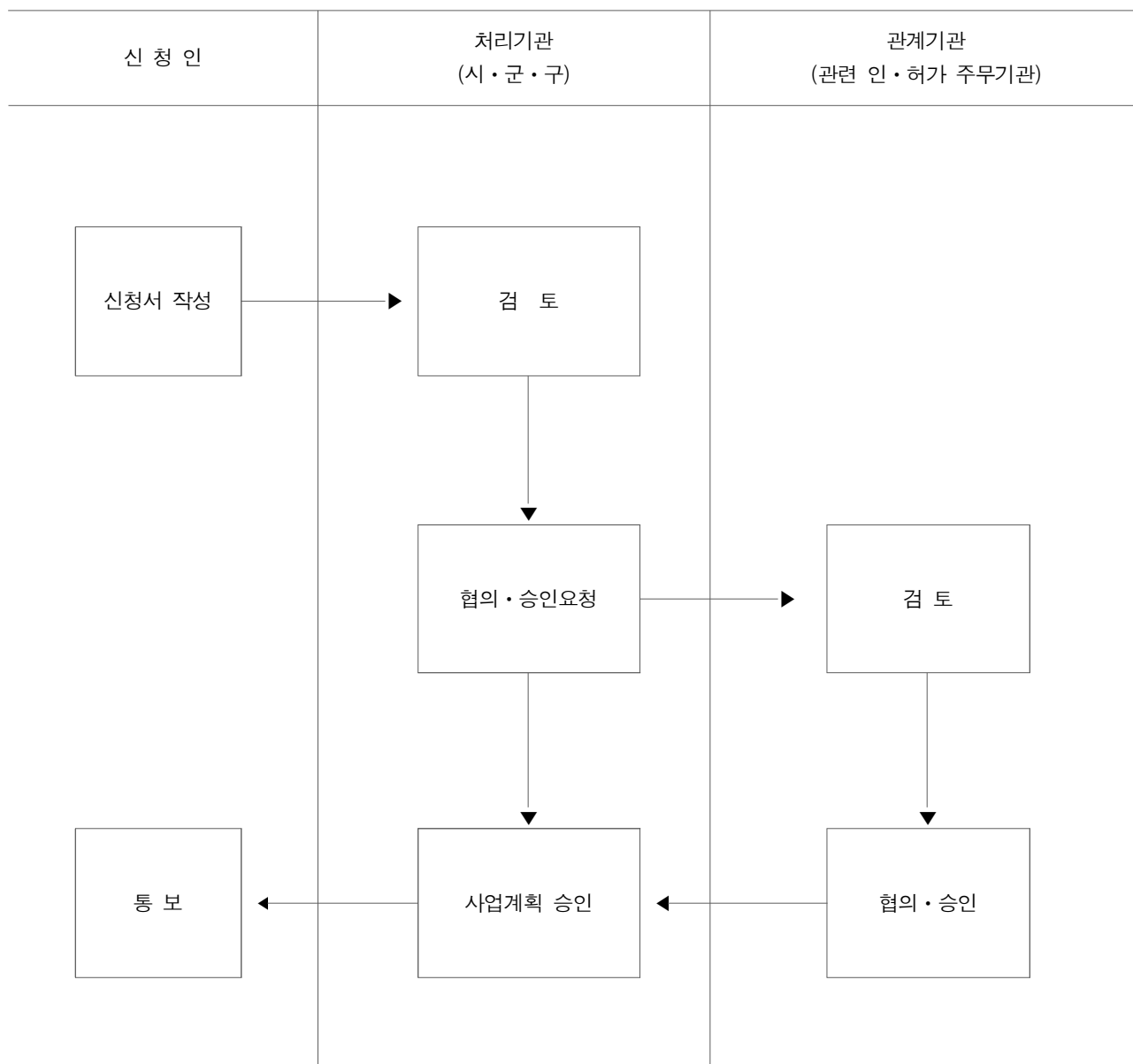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앞쪽)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동결			온도(섭씨)		℃		
			냉장			온도(섭씨)				
					T/D					
					M/T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 서류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과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없음
	선상가공업	1. 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선은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기타 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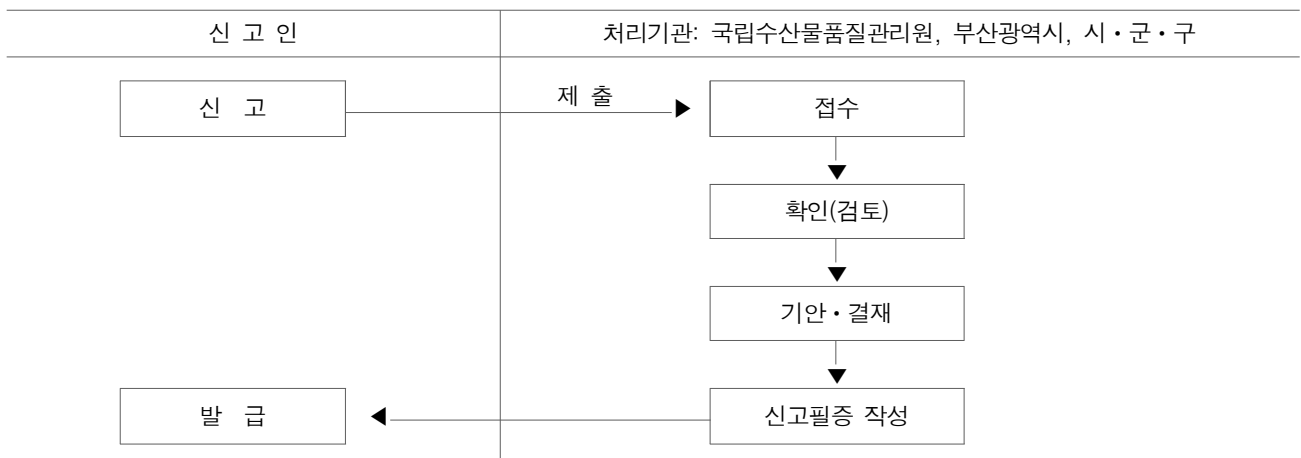
작성 방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로 1일 생산능력 및 수용능력을 적습니다.

업 종 별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어유(간유) 가공업	• 어유	• 간유
냉동·냉장업	• 수산물원형동결()	• 수산물처리동결()
선상가공업 • 어유(간유) 가공업 • 냉동·냉장업	• 어유 • 냉동·냉장 • 수산피혁	• 간유 • 수산물처리동결
기타 가공업	• 비료	• 호료 • 사료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앞쪽)

제 호					
신고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1일 생산능력		수용능력		
	T/D		M/T		
선상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 능력	동결	일산능력	온도(섭씨)	
		냉장	저장능력	온도(섭씨)	
			℃		
			℃		
조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내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또는 능력		

2. 행정처분

처 분 일	처 분 사 유	확 인

3. 그 밖의 사항: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가공업의 종류	신고필증번호
---------	--------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능력
----------------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신고필증 발 급
신고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광역시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신고필증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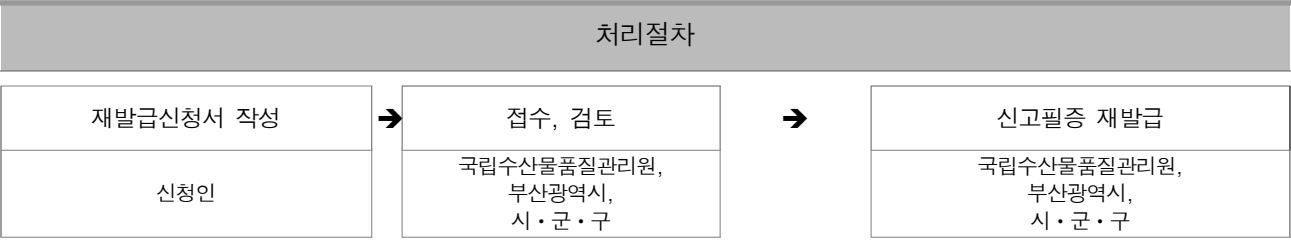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

(제1쪽)

1. 신고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선상가공업은 선명)					
가공공장의 위치 (선상가공업은 선적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의 주소					
가공업의 종류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제품 생산능력		M/T			
처리능력	동결	1일 생산능력	T/D		
	냉장	저장능력	M/T		
시설연도					
가공공장의 부지면적 및 건물면적과 규모			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능력		
건물	면적(㎡)	규모	기계 또는 기구의 명칭	대수	최대능력
제한 또는 조건					

210mm×297mm[백상지 80g/㎡]

2. 신고사항의 변경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3.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성명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구분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전반기 말 유효건수	기간 중 처분건수 (반년간)	기간 중 폐업건수 (반년간)	기간 말 유효건수
신고					
합계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처분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활동상황 보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해당분야 경력						
기능보유 내용	신청분야	[] 수산전통식품명인 [] 일반수산식품명인()					
	수산식품유형			품목			
	보유기능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한
기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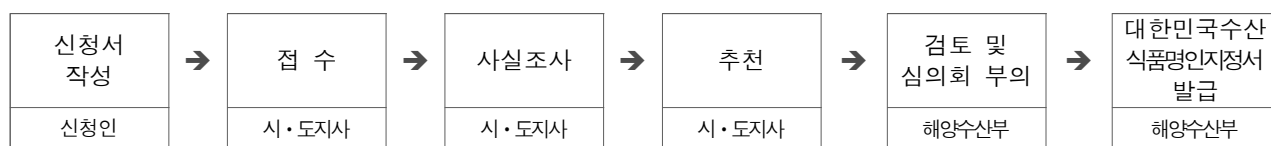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 유래·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호의 분야만 해당합니다) 5. 사진(3.5cm×4.5cm) 2장	수수료 없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신청분야 : [] 수산전통식품명인 [] 일반수산식품명인()		
	해당분야 경력		
추천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별지 제14호서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서
DESIGNATION OF KOREAN SEAFOOD GRAND MASTER

1. 지정번호: 제 호

(Designation No.:)

2. 성 명:

(Name)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4. 주 소:

(Address)

5. 지정분야:

(Designated Field)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Designated Item or Expertise)

사 진
(Photo)
(3.5×4.5cm)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person at above is designated as a Korean Seafood grand master in accordance with SeaFood Industry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DESIGNATION DATE: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직인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120 g/m²]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지정현황	지정번호			지정년도		
	지정분야·지정품목(기능)					
보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활동상황	제품 생산 실적	품명		생산량(M/T)		
	전수 교육	전수대상자	전수방법	횟수(일수)	주요내용	
	체험 교육	대상	인원	횟수(일수)	주요내용	
	기타 실적					
	비 고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활동상황 보고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수산물명인 및 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 대한민국수산물명인 ☐ 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 ※ 해당란에 √ 표시	성명(대표자)					성별(남, 녀)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보유기능 / 품목			
	주소					전화번호			
업체현황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지정 품목 연간생산능력(톤/년)								
	시설 연면적(제곱미터)					전수시설 연면적(제곱미터)			
사업신청 분야	시설 자금	식재료 구매자금	판촉 사업	홍보 사업	연구 교육 사업	시설신설 증설사업	도서발간, 세미나개최	장려금	기타
	※ 해당분야에 √표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물명인 및 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 지원(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장려금을 제외한 사업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에는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시기 및 규모, 소요예산 등을 기재합니다. 2. 대한민국수산물명인 활동 실적자료(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장려금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3. 전수 실적 명세서(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 (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만 해당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승인	➔	사업시행	➔	사업비지급/정산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신청인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전수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추천인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성명	생년월일		지정번호
	주소			보유기능 / 품목
	전자우편			전화번호
추천 전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련분야 종사기간 / 보유기능		
	주소	전화번호		
추천 사유				
※ 추천인(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보유기능 및 품목만 전수 가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수교육 계획서 1부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의 경력증명서 1부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의 제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수수료 없음
------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추천서 작성	→	접수	→	사실 확인	→	검토 및 결정	→	전수자 선정서 발급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 선정서

1. 지정번호: 제 - 호

2. 성 명:

3. 생년월일:

4. 주 소:

5. 지정분야: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물명인전수자로 선정합니다.

사 진
(3.5cm×4.5cm)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수산물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최근 6개월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식품품목제조보고서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처리기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처리기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통보)

- 79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생산개시연도			
	연간생산능력			
	원료사용 : 주원료(), 부원료()			
	제품특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	--	---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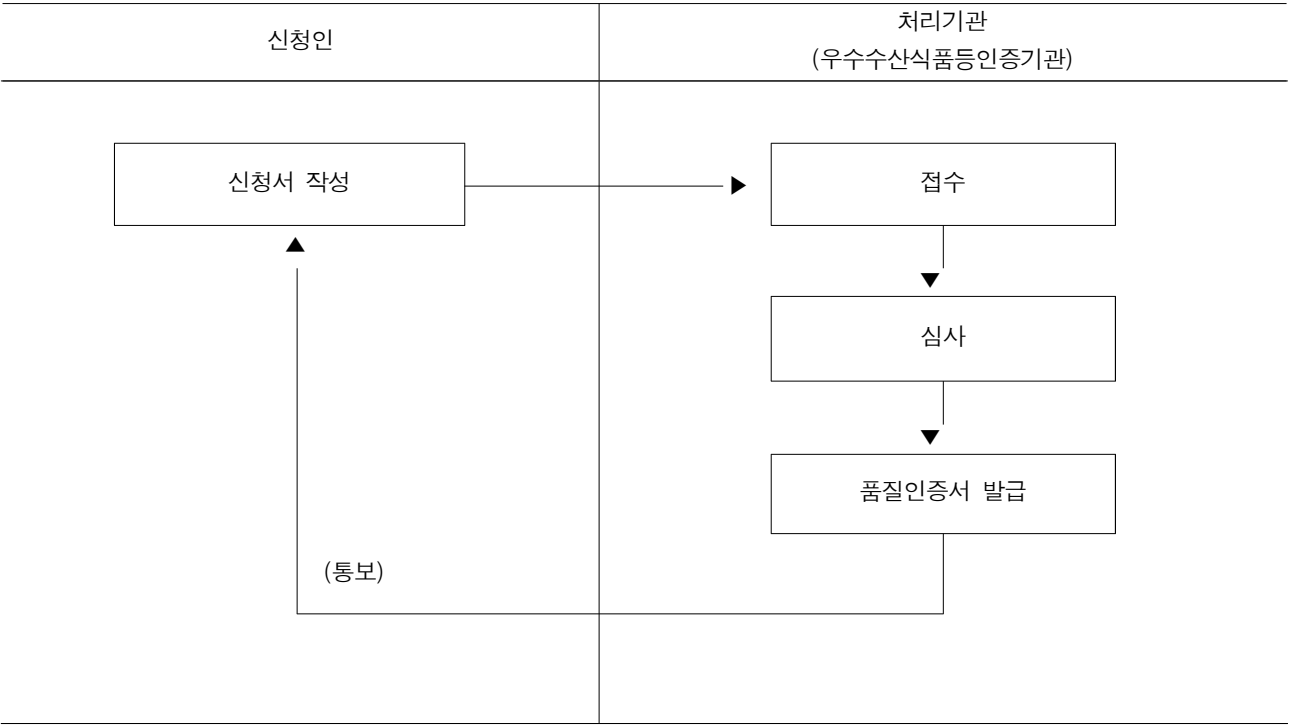
2. 수산전통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우수수산 식품등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품의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 업체현황

신청인	공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개요	시설장비	대지(면적)	건물(면적)	보관창고(면적)	운반차량(대수)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 수			
	신청품목	품목	생산 개시일	연간 생산실적		연간판매실적	가동률	

2. 공장심사 결과

심사 사 일	평가결과													판정
	분 야	공장 입지	작업장	제조 설비	원료 조달/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용수 관리	개인 위생	환경 위생	유통 관리	포장/ 표시	합계		
	항목/배점	2/6	7/21	1/9	3/9	4/15	2/7	2/7	3/10	3/9	3/7	30/100		
	평점 계													

3. 제품심사 결과

구분	내 용
시험기간	
시험기관	
시험항목	
시험결과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생산제품명				
사용원료	주원료(주재료)		부원료(부재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수산전통식품의 주원료(주재료) 전량을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수산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업 체 명:

심사항목명	심사항목 수	배점	평점	판정
1. 공장입지	2	6		
2. 작업장	7	21		
3. 제조설비	1	9		
4. 원료 조달·관리	3	9		
5. 공정·품질 관리	4	15		
6. 용수관리	2	7		
7. 개인위생	2	7		
8. 환경위생	3	10		
9. 유통관리	3	9		
10. 포장 및 표시	3	7		
합계	30	10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제2항 별표 4 제2호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산전통식품 시험 성적서

업체명				대표자	
신청품목					
품질기준심사결과					
공통기준					
개별기준					
품질시험결과					
시험품목명	시험기간	시험기관	시험항목	시험결과	

위와 같이 시험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KOREAN TRADITIONAL SEAFOOD

1. 인 증 번 호:
(Certification Number)
2. 제조업체명:
(Name of Company)
3. 대 표 자 명::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4. 공장 소재지:
(Location of Company)
5. 인증 규격번호:
(Certification Standard No.:)
6. 품목명 및 인증내용:
(Name of Certified Item and Description of Certification)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quality of the traditional food specified above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Seafood Industry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Certification Date: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DIRECTO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

직인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공장명		설립일(연월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내용	영업의 종류				
	신청 품목명(유형)				
	제품생산 개시 연도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실적				
	원재료명 및 원산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2. 최근 1년간 해당 품목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3. 해당 품목의 원료가 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수산가공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우수수산물등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산지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신청인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업소)명			사업장 규모(㎡)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신청내용	영업의 종류				
	개업 일자(연월일)				
	연간 매출액				
	주 메뉴명				
	식재료 원산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2.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3.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산지인증 음식점등의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원산지
인증 표시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1. 인증번호:
2. 인증업체명:
3. 대표자명:
4. 공장 소재지:
5. 품목명 및 인증내용:
6. 유효기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직인

※ 원산지인증표시는 원재료 국가비율을 95%이상인 경우와 100%인 경우로 구분 표시

210mm×297mm[백상지(150g/㎡)]

원산지
인증 표시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

1. 인증번호:
2. 인증업체명:
3. 대표자명:
4. 음식점등 소재지:
5. 품목명 및 인증내용:
6. 유효기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음식점등 원산지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직인

※ 원산지인증표시는 원재료 국가비율을 95%이상인 경우와 100%인 경우로 구분 표시

210mm×297mm[백상지(150g/㎡)]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수산가공식품 [] 음식점등 [] 원산지인증 [] 재발급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는 10일)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인증품목 (인증사업장)	인증번호				
	인증일(연월일)				
	품목 또는 영업종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원산지인증서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원산지인증서(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공장명	설립일(연월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내용	영업의 종류		
	신청 품목명(유형)		
	제품생산 개시 연도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실적		
	원료명 및 원산지		
	인증번호		
인증일(연월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2. 최근 1년간 해당 품목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3. 해당 품목의 원료가 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업소)명	사업장 규모(㎡)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신청내용	영업의 종류		
	개업 일자(연월일)		
	연간 매출액		
	주 메뉴명		
	식재료 원산지		
	인증번호		
	인증일(연월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2.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3.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수산식품산업 표준인증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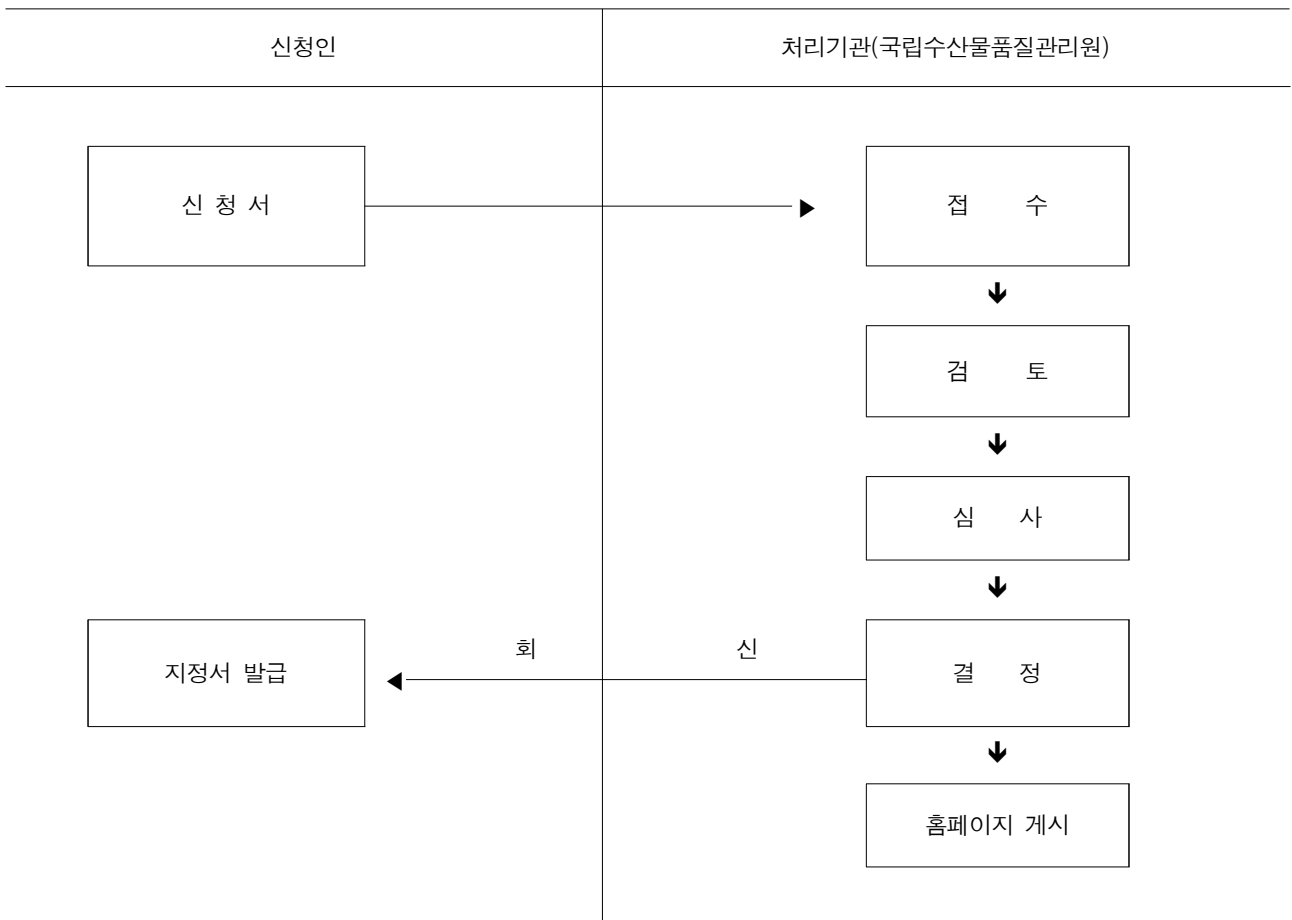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업무 분야	
유효기간	

위 기관을「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수산식품산업 표준인증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인증기관 지정 번호			
	인증기관 지정받은 날(유효기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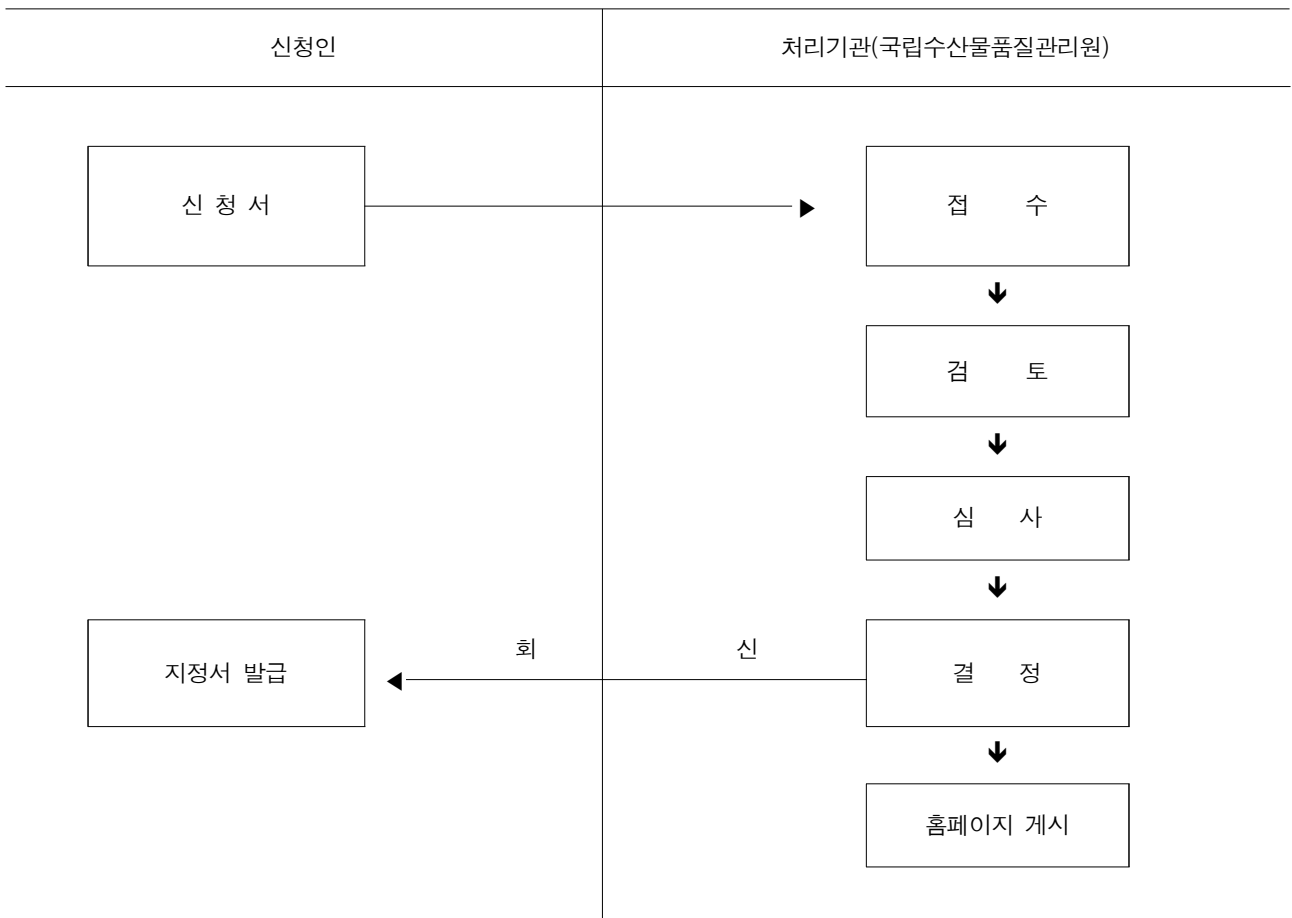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5mm×85mm [PET-G카드, 연파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 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후관리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

55mm×85mm〔PET-G카드, 연파란색〕

(뒤쪽)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장 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후관리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인증품목 (인증분야 별로 해당 사항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자(연월일)		
	규격명	규격번호		
	종류(등급)			
	호칭			
승계사항	승계 전	승계 후	승계 연월일	
기관(업체)명				
대표자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서	수수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	---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품의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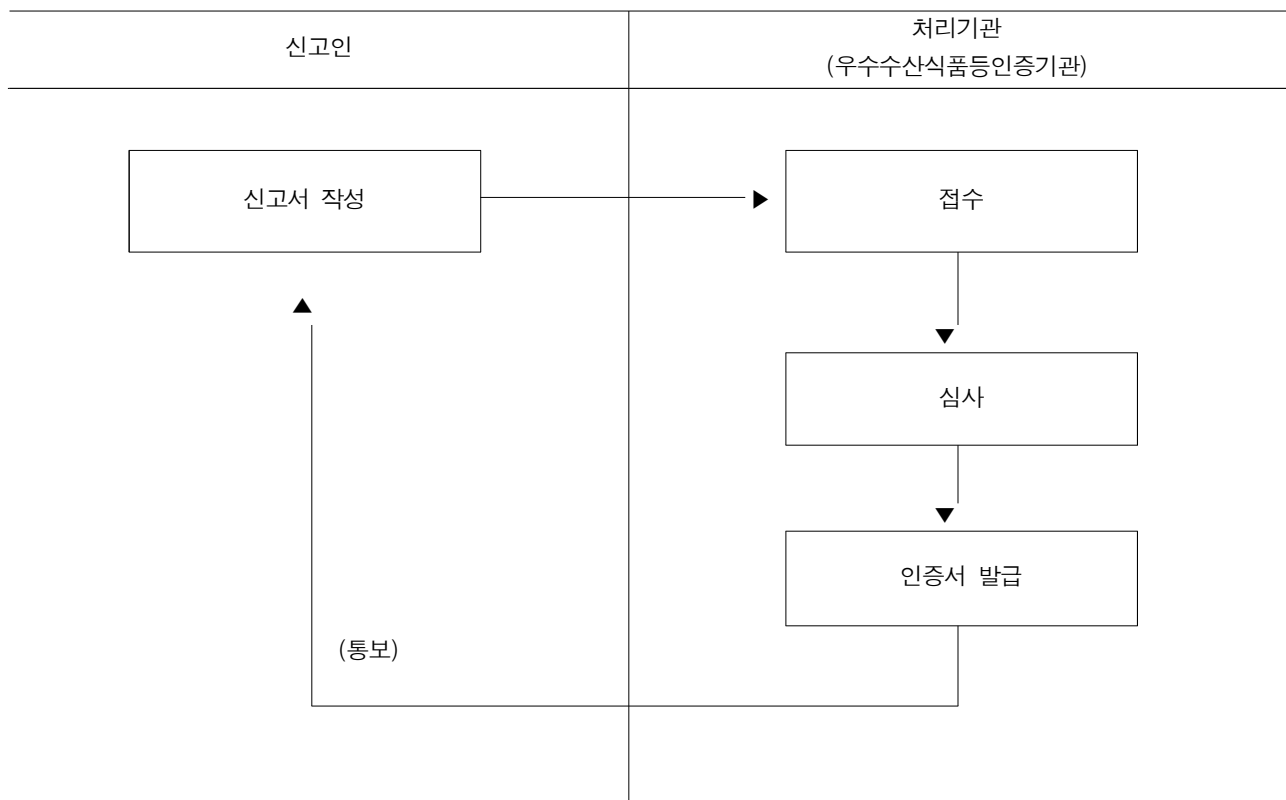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인증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인증업무 분야 및 범위	지정번호	지정 일자(연월일)	
	지정분야	유효기간	
	인증업무 수행범위		
승계사항	승계 전	승계 후	승계 연월일
기관명(업체)			
대표자			
사무소			
승계 사유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